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19호서식]

제 호
수 신 :
제 목 : 임시조치 신청(사전)

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동학대행위자	성 명	()		
	주민등록번호	(세)		
	직 업		피해아동등과의 관계	
	주 거			
	보 조 인			
피해아동등	성 명			
	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			
	변 호 사			
임시조치의 내 용 (중복신청가능)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(제1호)		
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(제2호) 기준지: []주거 []학교·학원 []보호시설 []병원 []그 밖의 장소()		
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제3호)		
	[□]	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(제4호)		
	[□]	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(제5호)		
	[□]	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(제6호)		
	[□]	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(제7호)		
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				

사법경찰관(보호관찰관)

별첨첨부

[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]